

■ 목 차

■ 소식 ■

카자흐스탄 법무법인 AK와 업무 제휴.....3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엔바이오컨스를 대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한 수처리 기업 설립 자문.....4

한국 쇼핑몰 운영법인을 대리하여 중국법인과의 합작사업 관련 자문.....5

한국 문화컨텐츠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과의 문화컨텐츠 수출계약 관련 자문.....5

중국 상해법인을 대리하여 한국에 한중 합자법인 설립 관련 자문 및 대행.....6

한국법인의 상해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사천성 소재 법인을 상대로 대금청구 소송.....6

한국화장품법인을 대리하여 중국에 독자법인 설립 및 투자 관련 자문.....7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중국법인의 합작사업 관련 자문.....7

[베트남] CJ E&M을 대리하여 베트남 영화제작사와 합작으로 현지영화 공동제작 투자 자문.....8

현대SNS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문 제공.....9

[라오스] KB금융을 대리하여 라오스 진출 자문.....10

[미얀마]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한국계 은행 최초로 미얀마 은행 예비 라이선스 취득 자문.....11

[필리핀]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필리핀화력발전소 EPC 계약 이행에 관한 자문.....12

[폴란드] 하나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폴란드 브로츠와프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 매입 자문.....13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물권법에 대한 사법해석(Ⅰ) 발표.....14

[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 관련 시행령 개정.....17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개정 시행.....21
 천진 등 12개 도시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설립.....21
 최고인민법원 물권법 사법해석 발표, 3월 1일부터 시행.....21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규정」 3월 10일부터 시행.....22
 [캄보디아] 캄보디아 통신법 공포.....23

■ 소식 ■

카자흐스탄 법무법인 AK와 업무 제휴



법무법인 AK 배정한 대표변호사(좌) · 법무법인 지평 양영태 대표변호사(우)

법무법인 지평은 3월 29일 카자흐스탄 법무법인 A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리츨칼튼 호텔에서 제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휴식에는 법무법인 지평과 AK 관계자, 카자흐스탄 주 알마티 총영사관, 알마티 한인회, 코트라, 한국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2005년에 설립되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계 유력 로펌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운영 및 관리, 기업 분쟁, 건설부동산, 세무/회계 부문에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AK의 지역전문성 및 현지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지평의 분야별 전문성 및 국내 고객 본사와의 신뢰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결합하여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보다 신속하고 수준 높은 법률자문을 동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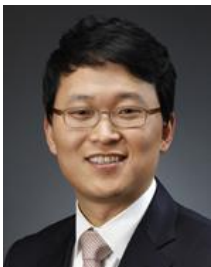
엔바이오컨스를 대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한 수처리 기업 설립 자문

지평은 엔바이오컨스를 대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한 수처리 기업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대구시, 中 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2015. 12. 28.\)](#)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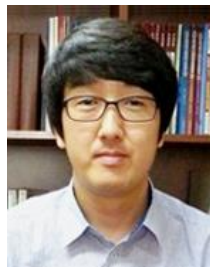
정철 변호사



경영동 외국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채광호 외국변호사

한국 쇼핑몰 운영법인을 대리하여 중국법인과의 합작사업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쇼핑몰 운영법인을 대리하여 중국법인과의 합작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한국 문화컨텐츠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과의 문화컨텐츠 수출계약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문화컨텐츠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과의 문화컨텐츠 수출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문희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중국 상해법인을 대리하여 한국에 한중 합자법인 설립 관련 자문 및 대행

지평은 중국 상해법인을 대리하여 한국신교법인설립 관련 자문 및 대행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채광호 외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법인의 상해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사천성 소재 법인을 상대로 대금청구 소송

지평은 한국법인의 상해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사천성 소재 법인을 상대로 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한국화장품법인을 대리하여 중국에 독자법인 설립 및 투자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화장품법인을 대리하여 중국신교법인 설립 및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중국법인의 합작사업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중국법인의 합작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채광호 외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CJ E&M을 대리하여 베트남 영화제작사와 합작으로 현지영화 공동제작 투자 자문

지평 호치민지사는 CJ E&M을 대리하여 베트남 영화제작사와 합작으로 현지영화 '내가 니 할매다(Em La Ba Noi Cua Anh)' 공동제작 투자를 자문하였고, 역대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종전 박스오피스 1위이자 CJ E&M이 현지 영화제작사와 합작으로 공동제작 투자한 '마이가 결정할게2(De Mai Tinh 2)' 역시 호치민지사가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관련 기사]

- [아주경제 - '수상한 그녀' 베트남판 '내가 니 할매다', 베트남 영화 사상 최고 매출 기록 \(2016. 2. 24.\)](#)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 최규철 전문위원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현대SNS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문 제공

지평 호치민지사는 현대SNS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BizFact - 현대SNS, 베트남에 현지 법인 설립...컨설팅 서비스 시작\(2016. 2. 16.\)](#)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 최규철 전문위원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 해외업무 사례 - 라오스 ■

KB금융을 대리하여 라오스 진출 자문

지평 증권금융팀과 라오스팀은, 라오스 로펌 Lao Law & Consultancy Group과 협력하여 KB금융의 라오스 진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조선비즈 - KB금융, 라오스 자동차 할부시장 진출\(2016. 2. 4.\)](#)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미얀마 ■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한국계 은행 최초로 미얀마 은행 예비 라이선스 취득 자문

지평이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진행한 미얀마 현지 지점 설립 관련 라이선스 입찰 업무 결과, 신한은행이 한국계 은행 최초로 미얀마 은행 예비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신한은행, 미얀마 지점 연다\(2016. 3. 6.\)](#)

[담당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남유선 외국변호사



정진 외국변호사



오규창 외국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필리핀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필리핀화력발전소 EPC 계약 이행에 관한 자문

지평은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필리핀화력발전소 EPC 계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견(Legal opinion)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포스코건설, 필리핀 마신록 석탄화력발전 EPC계약 체결\(2015. 12. 1.\)](#)

[담당 변호사]



황인영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



노충욱 외국변호사



남유선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폴란드 ■

하나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폴란드 브로츠와프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 매입 자문

지평은 하나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폴란드 브로츠와프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를 매입하는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럽 지역 부동산 실물거래 투자 성공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서울경제 - \[단독\] 국내 기관, 아마존 물류센터 산다\(2016. 1. 4.\)](#)

[담당 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유정민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최정묵 외국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중국 최고인민법원 물권법에 대한 사법해석(I) 발표

(법무법인 지평 **경영동** 외국변호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월 23일에 「물권법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I)」(이하 '물권법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물권법 사법해석'은 총 21개 조항으로,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물권법 규정 중 특히 총칙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등기 관련

부동산등기제도의 확립은 물권법의 중대한 변혁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물권법 제14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성립, 변경, 양도와 소멸의 효력은 법률에서 등기하도록 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사법실무에서는 부동산등기 내용을 지나치게 경직된 것으로 해석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내용과 다른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 우선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는 '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물권법 사법해석' 제1조에서는 부동산 권리에 대한 귀속, 부동산물권등기의 기초가 되는 매매, 증여, 근저당 설정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수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나아가 당사자가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 사항이 진실한 권리상태와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공유관계에서의 우선매수권 관련

중국 부동산 가격은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현실적으로 대다수 젊은 부부들은 양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젊은 부부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공유 문제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물권법 제101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유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자기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정하여, '공유자 간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원칙은 제시하였지만 사법 실무에서는 세부 절차 및 기준의 부재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물권법 사법해석'에서는 6개의 조항으로 이러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즉 상속·증여로 인한 권리양도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다시 각 경우별 행사가능 기간을 특정하였습니다.

3. 선의취득 관련

물권법 제106조에 따르면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선의취득이 우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선의취득 요건으로는 (1)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한 시점에서 선의일 것, (2) 양수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수하였을 것, (3) 양도 대상이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이미 양수인에게 교부하였을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취득 요건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선의' 및 '양수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의 미비로 선의취득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총 4개 조항에 걸쳐 선의취득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제15조에서는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양수인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하는 시점에서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모르고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다시 제16조와 제17조에서 각각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와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중국 법규정 연원(淵源) 중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중국 각급 법원에 대하여 업무지침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해석의 공백을 메우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대국민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물권법 사법해석'을 계기로 앞으로 추가적인 사법해석들이 계속하여 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외국인 노동허가 관련 시행령 개정



(법무법인 지평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베트남 정부는 2016년 2월 3일 외국인 노동허가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시행령(Decree 11/2016/ND-CP, 이하 '**Decree 11**')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허가 대상자 요건의 완화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Decree 11 제3조).

- ① 임원(manager): 의장,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구성원, 사장, 부사장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임원
- ② 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해당 기관의 장
- ③ 전문가(expert): (i) 외국 기관의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소지자; 또는 (ii)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동종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④ 기술자(technician): 1년 이상 기술 훈련을 받고 동종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위 직급 중 전문가의 요건이 종래에는 동종 업종 경력 5년 이상이었으나, Decree 11에서는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 노동허가 면제 대상자의 확대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Decree 11 제7조 제2항).

- A.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B.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 C. 국제기구의 대표자
- D. 3개월 미만 용역 수행자
- E. 외국 변호사
- F. 국제조약에서 정한 경우
- G. 외국 학교 학생
- H. 경영컨설팅, 통신, 건축, 유통, 교육, 환경, 금융, 건강, 관광, 문화, 연예, 유통 등 WTO 양허안에서 정한 11개 서비스 분야를 영위하는 회사의 본사 파견자
- I. ODA 프로젝트의 리서치, 건축, 평가, 관리 및 실행을 위한 전문가 및 기술자
- J. 베트남 외교부로부터 통신 및 언론 분야 자격증을 받은 사람
- K. 국제학교의 교원 및 연구원, 베트남 교육부로부터 허가받은 교육기관 교원 및 연구원
- L. 외교 기관 및 국제기구 자원봉사자
- M. 30일 미만 단기 근로자로서 연간 누적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 사람
- N. 베트남 정부기관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업무 담당자
- O. 베트남 외교부로부터 허가받은 외교 업무 수행자의 가족
- P. 정부기관의 관용 여권 소지자
- Q. 기타 노동보훈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수상이 승인한 사람

위 대상자 중 K, M, P는 Decree 11에서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위 면제 대상자들은 근로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근로 예정지 소재 노동보훈국에 노동허가 면제 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 M의 단기 근로자는 이러한 면제 확인서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Decree 11 제8조 제2항).

3. 노동허가 신청 서류의 간소화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Decree 11 제10조).

- ① 노동보훈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한 신청서
- ② 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
- ③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범죄경력조회서
- ④ 임원, 경영자, 전문가, 기술자에 대한 자격 증명서
- ⑤ 6개월 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4x6cm, 탈모, 정면, 귀 노출, 안경 미착용, 흰색 배경)
- ⑥ 유효한 여권 사본
- ⑦ 본사 파견 근로자는 본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확인서 기타 노동허가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종래 요구되었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에 대한 관할 지역 인민위원장의 승인서는 Decree 11에서 삭제되었습니다. ② 건강진단서의 경우 종래에는 최근 6개월 내의 것을 요구하였으나, Decree 11에서는 최근 12개월 내의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③ 범죄경력조회서의 경우 Decree 11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거주자인 경우에는 베트남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조회서만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4. 복수 노동허가의 명시

Decree 11은 기존에 노동허가를 발급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다시 노동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Decree 11 제10조 제8항 a호, b호).

- ① 기존 노동허가와 동일한 직무(job position)로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 ② 기존 노동허가와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5. 노동허가 발급 기간의 단축

종래 노동허가 발급 기간은 필요충분한 서류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이었으나, Decree 11은 7영업일로 단축하였습니다(Decree 11 제12조 제2항).

6. 노동허가 재발급 신청기간의 연장

종래에는 노동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내지 15일 이전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Decree 11은 만료일로부터 5일 내지 45일 이전으로 연장하였습니다(Decree 11 제13조 제2항).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대기오염방지법 개정 시행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후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하여 배출총량규제와 오염물 배출 인허가를 시행하는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중점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연합 방지·통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시급 이상의 환경 주무부처가 주요 오염물 배출 기업명부를 작성하여 전사회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전사회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천진 등 12개 도시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설립

국무원은 지난 1월 12일에 「천진 등 12개 도시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설립 승인 의견」을 발표하여 천진, 상해, 중경, 합비, 정주, 광주, 성도, 대련, 녕파, 청도, 심천, 소주시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무원은 중국 항주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참고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국무원은 이 의견에서 관련 부처와 성급 정부가 종합시범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정부의 관리와 기업의 자율을 결합'하는 등의 정부의 운영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물권법 사법해석 발표, 3월 1일부터 시행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월 23일에 「물권법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I)」(이하 '물권법 사법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물권법 사법해석'은 그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에 충실히 하여 재판 실

무에서 제기되어 온 핫이슈, 난제를 대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물권법 해석'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규정」 3월 10일부터 시행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월 14일에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하였고,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분 참여를 한 기업은 인터넷출판서비스업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인 내자기업의 경우에도 인터넷출판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별도의 <인터넷출판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인터넷출판서비스 기관에 대하여 연도감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출판물 중 온라인게임은 온라인 상으로 출판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성급 출판 주무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심사에 통과되면 다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2차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캄보디아 통신법 공포

캄보디아 통신법(Law on Telecommunications)이 2015년 12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통신법은 통신 시설과 네트워크의 사용, 관리 및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통신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통신법 시행 1년 내 통신법상의 규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통신부(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는 통신법의 공포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통신사업의 관리는 물론 캄보디아 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